2022년도 연차 유급휴가 사용계획서 < 근로기준법 제 61조(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) 관련 >

1. 대상 근로자

성 명	생년월일	직 급	부 서
유병휘	1991-01-06	책임	기술1팀

2. 2023.02.03 기준일 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 "5.0" 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용계 획 내역을 전달드립니다.

<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>

해 당 월	사용 계획일	사 용 일 수
2 월	17 9) 일
3 월	13-(6 일	4 일
얜	일	일
열	일	일
월	일	일
원	일	일
궏	일	일
월	일	일
월	일	일
Pe	일	일
월	일	일
월	일	일

2023년 2월 ³ 일 작성자: 국 56시 (전명)

㈜동훈아이텍 대표이사 귀중